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11.9.)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4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9
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25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8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휴가 사용 방법을 개선하여 장기재직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을 삭제함

조 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근무기강 확립(안 제4조)	근무기강 확립(제1조2)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11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12조)
휴가의 종류(안 제17조)	휴가의 종류(제6조)
연가일수의 공제(안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제7조2)
병가(안 제21조)	병가(제7조5)
특별휴가(안 제23조제3항·제8항·제10항)	특별휴가(제7조7제5항·제11항·제13항)

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을 개선함(안 제23조제6항)

1) 삭제 : 세 번만 분할 사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재기재 및 중복된 조문을 삭제·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 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 업무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과의 일치 및 효율적인 휴가 사용 방법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규조문 대비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공무원”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을 “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하여서”를 “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당 겸임근무자의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항·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11항·제12항을 제6항·제7항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기존 제4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기존 제1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있고, 세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를 “있고”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분할 규정으로 인하여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재직기간이 초과한 공무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남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의2(비밀엄수)</u>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후단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u>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u>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u>제4조(근무기강 확립)</u> ① <u>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u></p> <p>② <u>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u> ①·② (생략)</p> <p>③ <u>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u></p> <p><u>제9조(겸임근무)</u> ① (생략)</p> <p>② <u>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p>	<p><u>제3조의2(비밀엄수)</u>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u>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u>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u>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u>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u>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u></p> <p><u>제9조(겸임근무)</u>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u>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u></p>	<p><삭 제></p>
<p><u>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u></p>	<p><u>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u></p>
<p><u>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u> <u>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u></p>	<p><삭 제></p>
<p><u>제21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u> <u>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u>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② <u>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u></p> <p>③ <u>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u></p> <p>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u>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u></p> <p>② (항 삭제 2015. 6. 10.)</p> <p>③ <u>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u></p> <p>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u>1인당</u>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3. (생략)</p> <p>⑤ <u>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⑥·⑦ (생략)</p> <p>⑧ <u>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⑨ (삭제 2006.8.14)</p> <p>⑩ <u>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⑪ <u>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세</u></p>	<p>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u>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u></p> <p><u><삭 제></u></p> <p>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u>1명당</u>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③ <u>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④·⑤ (현행 제6항·제7항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p> <p>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p> <p>⑫ (생략)</p>	<p>⑥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p> <p>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p> <p>⑦ (현행 제12항과 같음)</p>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가. 제안이유

-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출연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장학회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에 따른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경남도 사회적가치 감사결과 정비과제 신설(안 제13조·제14조)
 - 가) 지도·감독 등
 - 나) 출연금의 반환
- 2) 법령·조례를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 삭제
(안 제3조·제9조·제10조·제12조)

- 가) 정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43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다) 공유재산 무상대여 등 : 「공유재산법」
- 라) 공무원의 인력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제2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 경남도 사회적가치 감사결과 정비과제에 따라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출연금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거창군 장학회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독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출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u></p> <p><u>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u>국내·외</u>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u>② (생략)</u></p> <p><u>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u>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u></p>	<p><u>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삭 제></u></p> <p><u>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u>국내외</u>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u>② (현행과 같음)</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도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출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모두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 남설로 인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신설(안 제10조)
 - 가) 내용 :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기능 대신함

- 나) 근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2)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 상위법률 위임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유사·중복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규조문 대비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0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u></p>

〔 재 단 법 인 거 창 군 장 학 회 출 연 안 〕 〔 심 사 보 고 서 〕

2021. 11. 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 가.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665,000천원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665,000	665,000	665,000			665,000	

- 4)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장학사업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장학회는 장학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거창군장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2022년도 사업비 665백만원을 출연하여 거창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재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 업 명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 기본방향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지원
- 3) 수탁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직원현황 : 3명(센터장 1명, 팀원 2명)

4) 설치장소 :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사무실(2층)

5) 재위탁기간 : 2022. 1. 1.~2024. 12. 31.(3년)

※ 기존 위탁기간 : 2019. 7. 11.~2021. 12. 31.(3년)

6) 예산내역 : 국·도비 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단위 :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예산액	74,000	118,600	118,600

7) 위탁대상사무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등

8) 그간 사업현황

○ 등록기관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등록기관(개소)	26	28	28
원아수(명)	1,259	1,207	1,086

○ 순회방문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위생·안전	75	151	76
원아수(명)	0	69	26

○ 식생활교육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집합교육	-	-	-
방문교육	-	220회/539명	126회/142명

9)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현 위탁기관 재수탁 의향문의 : 2021. 7.
- 현 위탁기관 재수탁 의향서 제출·접수 : 2021. 8.
- 재수탁기관 운영실적 자체평가 실시 : 2021. 9.
 - 재위탁요건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전반
 - 자체평가 결과 : 평가점수91.1점 가결(60점 이상 위원회 상정)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9.
 - 현 위탁기관 재위탁 운영기관 선정 적합 여부 심의
 - 심의위원 : 6명(공무원 2명, 민간인 4명)
 - 심의결과 : 심사점수 96점 원안가결(60점 이상 원안가결)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1. 10.
- 재위탁 협약서 체결 : 2021. 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위탁의 내용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지도, 급식영양 컨설팅,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등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부합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 어린이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1. 11. 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근거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976,000천원

-2022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843,000	976,000	976,000			976,000	

4)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6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 본 출연안은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4조에 따라 재단의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문화재단은 군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자 군민중심의 문화정책 추진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통한 지역문화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창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거창한마당대축제와 거창국제연극제가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내년에는 재단측의 철저한 관리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1. 11. 9.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1. 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거창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2)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3) 사 업 비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4,114천원

-2022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3,486	4,114	4,114			4,114	

※ 산출기초 : '20년 결산 보통세 34,280,189천원 × 1.2/10,000

4)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 본 출연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2년도 우리군 부담분 4,114천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 개발, 지방세 포럼 등의 사업수행을 통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세 업무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